

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| | | |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사건 | 2025타경52137 부동산강제경매 | | | 매각 물건번호 | 2 | 작성 일자 | 2026. 3. 8. | 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 | 임성환 | <u>전자서명완료</u> |
| 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 | | 별지 기재와 같음 | | 최선순위 설정 | 2015.04.28.근저당권 | | 배당요구종기 | 2025. 7. 21. | | |
|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 | | | | | | | | | | |
| 점유자 성명 | 점유 부분 | 정보출처 구분 | 점유의 권원 | 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 | 보 증 금 | 차 임 | 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 | 확정일자 | 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 | |
| 임도영 | 211호 | 현황조사 | 점포 임차인 | 2020.02.29.- 2025.02.28. | 15,000,000 | 2,500,000 | 2021.02.25 | | | |
| <p><비고></p> <p>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</p> <p>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</p> <p>비고란</p> <p>인접호수와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판매 및 영업시설로 이용중임 집합건축물대장(표제부,갑구)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</p> | | | | | | | | | | |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2137

[물건 2]

2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
성남(분당)여객자동차터미널및복합건물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

철골철근콘크리트조 지하4층 지상7층 건물

1층 10015.22㎡

2층 17067.10㎡

3층 18808.33㎡

4층 18796.49㎡

5층 18811.18㎡

6층 18811.18㎡

7층 7129.17㎡

지1층 23697.69㎡

지2층 24735.84㎡

지3층 24430.86㎡

지4층 23451.20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3층 211호

철근철근콘크리트조 40.62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1
잡종지 27308.1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27,308.1분의 14.113

감정평가액 412,000,000

회차 기 일 최저매각가격 매수신청보증금

| | | |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회 | 2026.05.04 | 412,000,000 | 41,200,000 |
| 2회 | 2026.06.08 | 288,400,000 | 28,840,000 |
| 3회 | 2026.07.13 | 201,880,000 | 20,188,000 |
| 4회 | 2026.08.14 | 141,316,000 | 14,131,600 |

인접호수와 벽체 구분 없이 일체로 판매 및 영업시설
로 이용중임

집합건축물대장(표체부,갑구)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되
어 있음

